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규정 보완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96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제2205526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현행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현황	5
2.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금지행위 세분화 (안 제10조의2)	8
3.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처벌 강화 (안 제49조 등)	14
4.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안 제10조의3 신설)	20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220529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6.
3.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차 승차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승차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차 승차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매를 위하여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제재의 강도가 낮으며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와 같은 윗돈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한 한계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정판매’의 처벌 수위를 최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제1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10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승차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승차권마다 다르다는 점과 승차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승차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 신설).

라.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의2 신설).

마. 제10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신설, 안 제51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현행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현황

가. 현행법의 입법 취지

현행법은 제10조의2에서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금지 위반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관련 조항은 2011.5.24. 신설된 내용으로 승차권 등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 자가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당초 해당 내용을 제안한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054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경범죄처벌법」의 암표판매행위가

1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사책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결정됨.

나. 승차권 등 부정판매 관련 현황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승차권 부정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명절 기간에 특히 해당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거래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 온라인 매체 불법거래 삭제·삭제요청 건수(설, 추석기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합계	13	31	148 (136)	933 (933)	771 (771)
코레일	13 (13)	31 (30)	40 (36)	72 (72)	176 (176)
SR	—	—	108 (100)	861 (861)	595 (595)

*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현행법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단속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¹⁾, 「형법」상 업무방해죄²⁾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가 일부 있음.

1) 참고로, 국토교통부 등 단속기관이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위반 여부를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07호)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2024.12.3.)된 바 있음.

2)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코레일·SR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 사례 및 통계 】

코레일	2019년부터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등 노력을 통해 1건 적발·조치 :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 부과(2020.9월) -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0년 추석 명절승차권을 분당 최대 1,606회 조회하여 좌석을 부당확보(599석)
SR	최근 5년 간 발매·반환이 가장 많은 악성환불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송치 2023.1.30) - 해당 악성환불자는 최근 5년(2018년~)승차권 25,009매 구매 후 그 중 25,008매(99.9%)환불 (해당 회원은 강제 탈퇴 처리) - 승차권 다량 구매 및 환불로 국민의 승차권 구매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악성환불자에 대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에 따라 수사진행

(단위 : 건수)

구 분	수사의뢰	고발건수	관련기관
2020	0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021	0	0	
2022	0	0	
2023	7	0	서울수서경찰서
2024(9월)	10	0	서울수서경찰서, 경북경찰청
합계	17	1	

※ 자료 : 국토교통부

2.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금지행위 세분화 (안 제10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10조의2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

개정안은 현행법의 승차권 등 부정판매금지를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등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③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u>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u> <u>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0조의2(승차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u>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1.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u> <u>2.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u> <u>3.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u>

나.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8. 26.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의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적 암표판매 행위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2024.8.26.) 】

구 분	조치사항
① 전문적 암표판매 행위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 (처벌범위 확대)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공연·경기 입장권을 윗돈거래 하는 행위 금지 ⇒ 「공연법」 제4조의2, 「국민체육진흥법(’24.9.27.시행예정)」 제6조의2 개정
	○ (처벌수준 강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①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②형사처벌 수준 상향, ③법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 ⇒ 「공연법」 제40조(벌칙) 개정, 몰수·추징 규정 신설, 「국민체육진흥법(’24.9.27.시행예정)」 제49조(벌칙), 제51조(몰수·추징) 개정
② 입장권 부정판매 가격기준 명확화	○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 - 가격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입장권 판매 정가’로 개선 ⇒ 「공연법」 제4조의2, 「국민체육진흥법(’24.9.27.시행예정)」 제6조의2 개정
③ 암표거래 신고체계 개선	○ 스포츠경기 관련 암표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 법적근거 정비 ⇒ 관련 규정 정비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³⁾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에 대해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등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⁴⁾

개정안은 위와 유사한 취지로 철도분야에서의 암표 근절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동 법안과 같은 취지로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94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05호)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2024.9.13.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0조의2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 등 구매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제2호에서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사람의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한 경우를 금지하는데, 이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10조의2제1호 및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승객이 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방해로 볼 수 있으나, 예컨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전체 열차표의 10% 이하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임.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서 구체적인 범죄 양태, 처벌 수준,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사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 승차권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개정안의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위반 처벌규정 강화 (안 제49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함으로써 ①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②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벌칙을 신설하며, 해당 벌칙의 대상이 되는 이득액을 몰수·추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개정안은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신설>	제49조(벌칙) ①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승차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신설>	1.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1.·2. (생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설>	제49조의2(몰수·추징) ① 제49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제50조(양벌규정) ----- ----- ----- ----- 제49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② ~ ⑤ (생략)	----- ----- -----. ----- ----- -----. 제51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4.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3.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과 개정안 간 주요 차이점은 처벌 행위의 유형이 세분화되는 점, 압포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지는 점, 몰수·추징 근거가 마련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구분	처벌대상		처벌수준
현행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등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이득액을 취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양벌규정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양벌규정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압포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 확대 및 몰수·추징을 포함한 처벌 수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는 점, 철도 압포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첫째, 벌칙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행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암표매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암표 근절을 위한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수준 논의⁵⁾,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근절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참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 및 법정형이 상이해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행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⁶⁾

5) 참고로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28호,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76호,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74호)의 경우에도 암표 관련 위반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처벌수준이 다양함.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28호, 제2204576호, 제2204674호) 검토보고, 문화

현행법 도입 당시 법률안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하였으나, 암표매매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기대이익 축소를 위해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판매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안 제10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판매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부정판매 행위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승차권 부정판매가 승차권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포상금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철도사업법」의 벌칙 및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⁷⁾로서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통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동법 및 시행령⁸⁾에 따르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철도사업법」에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의 별도 포상금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235. 「철도사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제도의 운영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입법례와 유사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 승차권 구매방해 금지 행위 적발과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승차권 부정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5